

##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# 검토보고서

2024. 9. 12.

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

##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#### 1. 제안경과

○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3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.

#### 2. 제안이유

 남양주사랑상품권의 할인율 및 할인 구매한도 확대 관련 단서를 신설하여 재난, 경제 위기 상황에서 소비진작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#### 3. 주요내용

○ 할인율 및 할인 구매한도 확대 관련 사항 단서 신설 (안 제5조제4항)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1

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
다. 관련부서 : 지역경제과

라. 입법예고 : 2024. 7. 11. ~ 2024. 7. 31. (20일간) / 의견없음

### 5. 검토의견

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대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할인율 및 할인 구매한도 확대 관련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그 목적에 부합하고 소비자들의 소비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계 법령 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## 붙임1

#### 관계법령

#### ☑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」

제4조(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 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.

-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.
-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-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, 권면금액,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- 제4조2(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,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리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·판매·환전하기위한 자금(이하 "상품권운영자금"이라 한다)을 보관·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」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·관리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

### 붙임2 비용추계 관련 자료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- 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  - 가. 자치법규안명
    - 「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」
  - 나. 재정 수반 요인
    - 제5조제4항 단서 신설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남양주사랑상품권 활성화 시책) ① ~ ③ (생 략)	제5조(남양주사랑상품권 활성화 시책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사	<b>4</b>
랑상품권 구매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	
에서 개인에게만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.	<u>다만,</u>
<단서 신설>	재난,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등
	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
	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율과 할인 구매
	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- ※ 착한가격업소 남양주사랑상품권 추가할인(5%) 국비지원 사업 추진(2회추경 반영)
- 2. 미 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- 3. 미 첨부 사유
  - 남양주사랑상품권 할인율 및 할인구매 한도 단서를 신설하여 착한가격업소 추가할인 지원사업 추진 예정으로 소요예산이 1억 미만임.
  - 소요예산(예정) : 13,400천원(국비(3%) 8,000 / 시비(2%) 5,400)
- 4. 작성자

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장 임대훈